글로벌 리포트

담수생물 및 생물 관련 분야의
글로벌 동향 및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ABS에 대하여

해외사례분석

2002년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네덜란드)는 나라별로 유전·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후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일본 나고야)에서 국제협약 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그에 따라 각 나라와 기업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소식에서는 해외에서 분쟁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도의 구자라트Gujarat주의 경우 기업과의 47건의 합의를 통해 650만루피(한화 약 1억 1297만원)가 지역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에 납부되어서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이익도 공유하지만 다른 예로 인도 서고츠 지방에서는 항당뇨 성분을 가진 식물이 발견되어 특허를 신청하였고 특허신청에 있어서도 전통지식보유자가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공유는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식물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의 감미료는 코카콜라 라이트 등 다이어트 탄산음료의 감미료로 쓰이고 있으며 토착민의 전통지식에 기인한 '천연'감미료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토착민(브라질 및 파라과이의 과라니족)은 어떠한 이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출물 또는 합성 스테비아는 특허권의 보호를 받으며 다국적기업에서 생산되고 판매가 되는 반면 생체는 미국, 유럽 스위스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스테비아 재배 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공의 루이보스와 허니부시 차 제조업계들은 카오이(Khoi)와 산(San)족의 이익공유에 대한 정부 보고서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혼란을 주장하며, 브라질내 새로운 ABS법은 토착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비아

네델란드 환경평가국에 의해 작성된 접근 및 이익공유의 이행 현황 및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적 차원의 이행은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생물탐사행위가 상업적 의도 없이 이뤄져 그 경제적 이익은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별, 국제기구 등에서 다양한 워크숍과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이지만 다국적 기업과의 이해관계, 법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논의 중이거나 분쟁중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BS가 과학자들에게는 연구의지를 꺾는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EU규칙 511/2014이 도입됨으로써 천연물을 이용한 연구 및 발명이 과거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급된 규칙이 발효되면 생물자원을 사용한 경우 연구자들은 제공국의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적절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이행 하여야 하며, 특히, 연구기금의 수령자의 경우 이러한 의무이행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에, 오히려 생물에서 가치가 있는 물질을 찾기 보단 이미 합성된 물질을 이용해 행정적인 업무를 피해가려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나라의 면밀한 상황과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ABS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글 다양성보전연구팀 배미정
출처: ABS산업지원센터, www.abs.kr